#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허5546 권리범위확인(특)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스마트

담당변리사 홍순표

피 고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이버드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재태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2. 10. 4. 2022당93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 1) 발명의 명칭: 스쿠터용 슬라이더 짐받이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5. 7. 2./ 2016. 3. 2./ 제10-1601126호
  - 3) 청구범위

[청구항 1] 스쿠터의 후미부에 부착되는 4각형상의 고정설치대(1)위에 4각형상으로된 집반이프레임(2)을 적층하고 고정설치대(1)의 양측면에 형성된 안내레일(101) 안내홈(102)에 집반이프레임(2)의 양측저면에 형성된 안내판(201)의 내측면에 형성된 이동레일(201a)을 결합하여 집반이프레임(2)이 고정설치대(1) 위에서 길이방향으로 슬라이드 되게 하는 것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집받이프레임(2)의 일측 안내판 표면에 안내관체(202)를 부착하여 안내관체 중심부에서 고정설치대(1)의 안내레일(101) 표면에 형성된 고정홈(103)(104)을 향해 안내공(203)(203a)을 뚫어 내외측 안내공을 관통하는 고정봉(204)을 삽통하고, 상기 고정봉(204)은 안내관체(202) 내부에서 안내레일의 고정홈(103)(104)쪽으로 탄력이 장진되게 고정봉(204) 내측단 외주면에 형성한 돌기(204a)와 안내관체(202)의 외측 안내공(203) 내벽 사이에 코일스프링(205)을 설

치하고, 고정봉(204)의 외측단을 외측 안내공(203) 외부로 돌출시켜 손잡이(204b)를 장치한 제1고정자(가)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일측 안내레일(101)의 말단에서 짐반이프레임(2)의 안내판(201)에 형성된 안내공(206)을 향해 고정볼트(3)를 설치하고 고정볼트 돌출단에 고정너트(4)를 나사결합하여 고정너트의 내면이 안내판(201)에 밀착될수 있게 하되, 고정너트(4) 중심공(401)에 연결볼트(5)를 끼워 연결볼트 내측단을 고정볼트(3) 중심나사공(301)에 나사결합시키고 고정너트(4) 중심공과 연결볼트(5) 사이에코일스프링(402)을 장치한 제2고정자(나)를 함께 구비하여(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집반이프레임(2)의 위치를 제1고정자(가)가 설정하면 제2고정자(나)가 설정위치에 고정시키도록 한(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스쿠터용 슬라이더 짐받이(이하 '이 사건 제1항발명'이라 한다).

# 4) 주요 내용과 도면

#### □ 기술분야

본 발명은 스쿠터용 슬라이더 짐받이에 관한 것으로, 본원 출원인의 선등록 특허발명 제 10-0942247호를 개량하여 짐받이프레임의 위치설정 조작과 설정위치에서의 고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조작의 편리성이 향상되게 구성한 것이다.

#### ② 배경기술 및 해결과제

선행 발명에서는 스쿠터후미에 부착되는 고정설치대 위에 짐받이프레임을 적층하여 짐받이프레임의 양측면에 형성된 이동레일을 고정설치대의 양측면에 형성된 고정레일에 결합시켜 슬라이드되게 하고, 고정시에는 고정설치대의 후미측 중앙부에 형성한 걸림부의 고정관에 짐받이프레임에 장치한 고정봉이 삽탈되게 하여 고정과 해제가 이루어지게 것이므로 고정부의 구조가 복잡하여 제작비용이 많아 고정관과 고정봉 사이에 유격이 발생하면 주행시소음이 발생하여 귀에 거슬리는 불편이 있었다.

#### ③ 과제의 해결수단 및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은 스쿠터의 후미부에 부착되는 4각형상의 고정설치대(1)위에 4각형상으로 된 짐

받이프레임(2)을 적층하고 고정설치대(1)의 양측면에 형성된 안내레일(101) 안내홈(102)에 짐 받이프레임(2)의 양측저면에 형성된 안내판(201)의 내측면에 형성된 이동레일(201a)을 결합 하여 짐받이프레임(2)이 고정설치대(1) 위에서 길이방향으로 슬라이드 되게 하는 것에 있어 서, 짐받이프레임(2)의 일측 안내판 표면에 안내관체(202)를 부착하여 안내관체 중심부에서 고정설치대(1)의 안내레일(101) 표면에 형성된 고정홈(103)(104)을 향해 안내공(203)(203a)을 뚫어 내외측 안내공을 관통하는 고정봉(204)을 삽통하고, 상기 고정봉(204)은 안내관체(202) 내부에서 안내레일의 고정홈(103)(104)쪽으로 탄력이 장진되게 고정봉(204) 내측단 외주면에 형성한 돌기(204a)와 안내관체(202)의 외측 안내공(203) 내벽 사이에 코일스프링(205)을 설 치하고, 고정봉(204)의 외측단을 외측 안내공(203) 외부로 돌출시켜 손잡이(204b)를 장치한 통상의 제1고정자(가)와, 일측 안내레일(101) 말단에서 짐받이프레임(2)의 안내판(201)에 형 성된 안내공(206)을 향해 고정볼트(3)를 설치하고 고정볼트 돌출단에 고정너트(4)를 나사결 합하여 고정너트의 내면이 안내판(201)에 밀착하게 하고, 고정너트(4) 중심공(401)에 연결볼 트(5)를 끼워 연결볼트 내측단이 고정볼트(3) 중심나사공(301)에 나사결합시키고 고정너트(4) 와 연결볼트(5) 사이에 코일스프링(402)을 장치하여서 된 제2고정자(나)를 같이 구성함으로 써, 짐받이프레임의 위치를 설정하는 제1고정자(가)와, 위치가 설정된 짐받이프레임을 확고 히 고정하는 제2고정자(나)의 결합으로 증진된 효과를 내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 4 발명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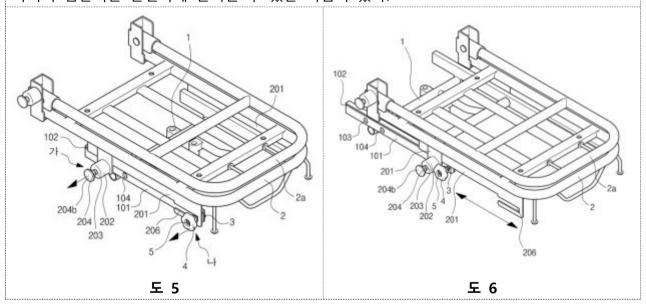
이와 같이 된 본 발명은 제2고정자(나)의 고정너트(4)를 풀고 제1고정자(가)의 고정봉(204) 손잡이(204b)을 잡고 밖으로 당기면 고정봉이 안내레일의 고정홈에서 분리되므로 짐받이프레임(2)과 고정설치대(1)사이의 걸림이 해소되어 짐받이프레임을 고정설치대 위에서 전후로 슬라이드 시킬 수 있고, 슬라이드 거리가 정해져서 고정봉(204)을 당기고 있다가 손을 놓으면 고정봉(204)이 안내관체 속에 장치된 코일스프링의 탄력을 받아 내향하여 안내레일의 고정홈에 투입되어 짐받이프레임이 고정설치대 위에서 고정되게 되는데 이때 짐받이프레임의 위치를 스쿠터 좌대에서 내향 또는 외향한 위치에 설치한 고정홈(103)(104)에 선택함으로써, 필요한 위치에 짐받이프레임을 고정시킬 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짐받이프레임의 위치가 정해지면 제2고정자(나)의 고정너트(4)를 고정볼트(3)에 나사조립하여 고정너트(4)의 내면에 안내판(201)의 표면에 밀착되게 하면 안내판(201)의 내측면과 안내레일(101)의 표면이 서로 밀착하여 짐받이프레임을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고정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의 고정너트(4)는 고정볼트(3)에 나사 결합된 연결볼트(5)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고정너트(4)를 풀었을 때 고정볼트(3)에서 완전분리될 염려가 없고 나사공 내측과 고정볼트(3) 외면 사이에 코일스프링(402)이 장진되어 있으므로 고정너트를 조였을 때, 긴장력을 향상시켜 주고 고정너트를 풀었을 때 고정볼트와의 이완을 막아주므로 고정너트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이점을 얻는다.

따라서 본 발명은 고정자의 구조가 간편하면서 사용이 용이하고 고정효과가 확고하여 슬라이더 짐받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나. 확인대상발명(갑 제4호증)

확인대상발명은 '슬라이더 짐받이'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과 도면은 별지와 같다1).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22. 4. 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 였다.

<sup>1) 2022. 9. 6.</sup> 최종 보정된 것까지 반영

2)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2당934호로 심리한 다음, 2022. 10. 4.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짐받이프레임(2)의 전진 상태에서 '고정홈(103)(104)'와 같이 복수의 설정위치를 가지는 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워고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그런데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나. 피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 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구성 요소	이 사건 특허발명	확인대상발명
1	스쿠터의 후미부에 부착되는 4각형상의	오토바이의 후미부에 부착되는 4각형상의
	고정설치대(1)위에 4각형상으로 된 짐받	고정설치대(1)위에 4각형상으로 된 짐받이
	이프레임(2)을 적층하고 고정설치대(1)의	프레임(2)을 적층하고 고정설치대(1)의 양
	양측면에 형성된 안내레일(101) 안내홈	측면에 형성된 제1 안내레일(101) 안내홈

성된 안내판(201)의 내측면에 형성된 이 동레일(201a)을 결합하여 짐받이프레임(2) 이 고정설치대(1) 위에서 길이방향으로 슬 라이드 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짐받이프레임(2)의 일측 안내판 표면에 안 내관체(202)를 부착하여 안내관체 중심부 에서 고정설치대(1)의 안내레일(101) 표면 에 형성된 고정홈(103)(104)을 향해 안내 공(203) (203a)을 뚫어 내외측 안내공을 관통하는 고정봉(204)을 삽통하고, 상기 고정봉(204)은 안내관체(202) 내부에서 안 내레일의 고정홈(103)(104)쪽으로 탄력이 장진되게 고정봉(204) 내측단 외주면에 형성한 돌기(204a)와 안내관체(202)의 외 측 안내공(203) 내벽 사이에 코일스프링 (205)을 설치하고, 고정봉(204)의 외측단 을 외측 안내공(203) 외부로 돌출시켜 손 잡이(204b)를 장치한 제1 고정자(가)와,

(102)에 짐받이프레임(2)의 양측저면에 형 (102)에 짐받이프레임(2)의 양측저면에 형 성된 안내판(201)의 내측면에 형성된 이동 레일(201a)을 결합하여 짐받이프레임(2)이 고정설치대(1) 위에서 길이방향으로 슬라 이드 되게 하는 슬라이더 짐받이입니다.

> 전측 고정부(가)는 짐받이프레임(2)의 일 측 안내판(201) 표면에 안내관체(202)를 부착하여 안내관체(202) 중심부에서 고정 설치대(1)의 제1안내레일(101) 위에 추가 형성된 슬라이딩 플레이트(103a)(103b)의 일측에 삽입홈(203)을 뚫어서 삽입홈(203) 을 관통하는 고정봉(204)을 삽통하고 -안내관체(202)에는 고정봉(204)이 통과할 수 있는 가이드구멍(209)(209a)이 생성됨-, 고정봉(204)에는 안내관체(202) 내부에서 슬라이딩플레이트(103a)(103b)쪽으로 탄력 이 장진되도록 고정봉(204)의 외주면에 형성된 돌기(204a)와 안내관체(202)의 외 측 가이드구멍(209) 내벽 사이에 설치되 어 고정봉(204)의 외측을 감싸는 제1 코 일스프링(205)을 설치하고 - 슬라이딩 플 레이트(103a)(103b)는 제1 안내레일(101) 위에 별도로 구성되어 전측 슬라이딩 플 레이트(103a)와 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 (103b)로 구성됨-, 고정봉(204)의 외측단 을 돌출시켜 제1 손잡이(204b)를 위치합 니다.

일측 안내레일(101)의 말단에서 짐받이프 레임(2)의 안내판(201)에 형성된 안내공 3

후측 고정부(나)는 일측 제1 안내레일 (101)의 후측에서 짐받이프레임(2)의 제2 (206)을 향해 고정볼트(3)를 설치하고 고 안내레일(208)에 형성된 제2 안내공(206)

2

정볼트 돌출단에 고정너트(4)를 나사결합 을 향해 고정볼트(3)를 설치하고 고정볼트 밀착될 수 있게 하되, 고정너트(4) 중심공 사결합시키고 고정너트(4) 중심공과 연결 볼트(5) 사이에 코일스프링(402)을 장치한 제2고정자(나)를 함께 구비하여

하여 고정너트의 내면이 안내판(201)에 (3)의 중간 일측에 너트(4)를 나사결합하 되 제2 코일스프링(402)은 너트(4)의 일단 (401)에 연결볼트(5)를 끼워 연결볼트 내 부와 접촉하고 제2 손잡이(207)의 끝단부 측단을 고정볼트(3) 중심나사공(301)에 나 와 접촉하며- 너트(4)는 제1 안내레일 (101)과는 일체로 형성되지 않으며 너트 (4)와 고정볼트(3) 머리 사이에 제1 안내 레일(101)이 위치함-, 고정볼트(3) 끝단에 제2 손잡이(207)를 끼우고 제2 손잡이 (207)의 중심축을 연결볼트(5)로 나사결합 시키고, 고정볼트(3)에 끼워지되 너트(4)와 제2 손잡이(207) 사이 공간에 위치하는 제2코일스프링(402)을 장치하고, 제2 손잡 이(207)의 일측면이 제2코일스프링(402)을 압착하여 제2 안내레일(208)과 접촉하게 됩니다.

짐받이프레임(2)의 위치를 제1고정자(가) 고정시키도록 한

4

전측 고정부(가)가 고정하는 경우에는 후 가 설정하면 제2고정자(나)가 설정위치에 측 고정부(나)의 고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으며, 후측 고정부(나)가 고정하는 경우 에는 전측 고정부(가)의 고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측 고정부(가)와 후측 고정부(나)가 동시에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2)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 가)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모두 고정설치대와 그 위에 적층된 짐받이프레임이 양측의 레일 결합을 통해 길이 방향으로 슬라이딩되는 점에서 공통된 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구성요소 2

- (1) 구성요소 2의 고정홈(103, 104)은 고정설치대의 레일 표면에 형성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인 삽입홈(203)은 레일에 추가된 슬라이딩 플레이트에 형성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성요소 2의 "고정홈(103)(104)"이 복수인 반면, 이와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삽입홈(203)"은 하나이므로, 양 발명의 대응 구성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 (가) 관련 법리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성요소 2의 고정홈이 복수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청구범위의 문언상 고정홈이 단수인 경우까지 포함

하여 해석하더라도 기술적 구성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유한 과제해결원리가 복수의 고정홈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단수까지 포함하는 구성으로 기술적 범위를 확장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될 우려도 크지 않다.

- ② 이 사건 특허발명에 고정홈이 2개인 실시예만 존재하기는 하나, 해당 실 시예에서 고정홈이 1개인 구성으로 변경하는 데 과도한 노력이 든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해당 실시예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청구범위에서 고정홈의 구성 개수를 복수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정홈에 병기된 도면부호 "(103)(104)"와 안내공에 병기된 도면부호 "(203)(203a)"가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고정홈이 2개인 실시예가 기재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면부호는 실시예와의 대비에서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된 것일 뿐이고 청구범위는 어디까지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 밖에 출원 과정에서 고정홈이 단수인 구성이 의식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보인다.
- ④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전체로도 그와 같이 한정하여야 할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짐받이프레임(2)의 위치를 제1고정자(가)가 설정"이라는 기재에 제1고정자에 의한 '위치 설정'이라는 기능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문언은 '고정설치대(1) 위에서 슬라이드 이동하는 짐받이프레임(2)의 위치가 제1고정자(가)에 의해 설정'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지 복수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⑤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짐받이프레임의 위치를 스쿠터 좌대에서 내향 또

는 외향한 위치에 설치한 고정홈(103)(104)에 선택함으로써, 필요한 위치에 짐받이프레임을 고정시킬 수 있게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기재에는 전진된 내향 또는 외향중 어느 하나의 위치를 고정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⑥ 피고는 관련 무효심판사건(2021당2296호)에서 '고정홈(103)(104)'이 2개의 고정홈을 의미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참작되어 특허등록을 유지하는 기각심결을 받았으므로, 이와 다른 해석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순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무효심판사건의 심결(갑 제15호증)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들 사이에 고정홈과 제1고정자(가)에 관한 구성요소 차이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인정된 내용이 있을 뿐 복수의 고정홈을 이유로 진보성이 인정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관련 무효심판사건의 심결(22면 참조)에서는 구성요소 2를 "고정대상물을 후진위치에서 고정하던 것을 전진 위치 혹은 전진 위치 및 후진 위치 모두에서 고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 즉 후진 위치와 전진 위치 중 어느 하나의 위치에 고정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다) 구성요소 3

구성요소 3의 코일스프링(402)은 고정너트(4)와 연결볼트(5) 사이에 장치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인 제2 코일스프링(402)은 고정볼트(3) 중간에 체결된 너트(4)와 제2 손잡이(207) 사이에 장치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라) 구성요소 4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핀고정부[제1고정자(가) / 전측 고정부]와 나사고정부[제2고정자(나) / 후측 고정부]를 짐받이프레임의 고정부로 함께 구비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한편, 구성요소 4에서 제1고정자(가)가 짐받이프레임의 위치를 설정하면 제2고 정자(나)가 설정위치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동시에 적용되는 구성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전측 고정부(가)가 고정하는 경우에는 후측 고정부(나)의 고정이 필요없는 경우가 있으며, 후측 고정부(나)가 고정하는 경우에는 전측 고정부(가)의 고정이필요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측 고정부(가)와 후측 고정부(나)가 동시에 적용되어야만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해당 기재의 문언 해석과 더불어 확인대상발명의 도 8로 알 수 있는 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의 삽입홈과 전측 고정부(가)의 간격과 후측 고정부(나)와 제2 안내공의 간격, 짐받이프레임과 전측 고정부(가), 제1 안내레일과 후측 고정부(나)의 각 결합관계, 확인대상발명의 고정 방식 등을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에서 전측 고정부(가)가 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의 고정홈과 결합하여 짐받이프레임의 위치를 설정하면, 후측 고정부(나)가 제2 안내공과 결합하여 짐받이프레임을 고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같이 제1고정자(가)[전측 고정부(가)]와 제2고정자(나)[후측 고정부(나)]가 동시에 적용되는 구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마) 소결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에 문언상 차이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균등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본다.

# 3)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

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등 참조).

####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다음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 발명이 갖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짐받이프레임의 고정부(특히, 전진고정 부)의 구조가 복잡하고 이에 포함된 고정관과 고정봉 사이에 유격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 [기술분야]

본 발명은 스쿠터용 슬라이더 짐받이에 관한 것으로, 본원 출원인의 <u>선등록 특허발명 제</u> 10-0942247호를 개량하여 <u>짐받이프레임의 위치설정 조작과 설정위치에서의 고정이 안정적</u>으로 이루어지고 조작의 편리성이 향상되게 구성한 것이다.

#### [배경기술]

선행발명에서는 스쿠터 후미에 부착되는 고정설치대 위에 짐받이프레임을 적층하여 짐받

이프레임의 양측면에 형성된 이동레일을 고정설치대의 양측면에 형성된 고정레일에 결합시켜 슬라이드 되게 하고, 고정시에는 고정설치대의 후미측 중앙부에 형성한 걸림부의 고정관에 집받이프레임에 장치한 고정봉이 삽탈되게 하여 고정과 해제가 이루어지게 것이므로 고정부의 구조가 복잡하여 제작비용이 많아 고정관과 고정봉 사이에 유격이 발생하면 주행시소음이 발생하여 귀에 거슬리는 불편이 있었다.

###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 [발명의 효과]

이리하여 <u>짐받이프레임의 위치가 정해지면 제2고정자(나)의 고정너트(4)를 고정볼트(3)에</u> 나사조립하여 고정너트(4)의 내면에 안내판(201)의 표면에 밀착되게 하면 안내판(201)의 내 측면과 안내레일(101)의 표면이 서로 밀착하여 짐받이프레임을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고정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의 고정너트(4)는 고정볼트(3)에 나사 결합된 연결볼트(5)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고정너트(4)를 풀었을 때 고정볼트(3)에서 완전 분리될 염려가 없고 나사공 내측과 고정볼트(3) 외면 사이에 코일스프링(402)이 장진되어 있으므로 고정너트를 조였을 때, 긴장력을 향상시켜 주고 고정너트를 풀었을 때 고정볼트와의 이완을 막아주므로 고정너트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이점을 얻는다.

따라서 <u>본 발명은 고정자의 구조가 간편하면서 사용이 용이하고 고정효과가 확고하여 슬</u>라이더 짐받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해당 과제해결을 위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고정봉을 갖는 제1고정자(가)와 나사결합구조를 갖는 제2고정자(나)를 마련하고 짐받이프레임의 고정에 제1고정자(가)와 제2고정자(나)를 함께 이용하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짐받이프레임의 위치설정 조작과 설정위치에서의 고정이 편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2) 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u>제2고정자(나)에 있어 고정너트의 중</u> 심공에 연결볼트를 끼워 연결볼트 내측단을 고정볼트 중심나사공에 나사결합하고 고정 <u>너트 중심공과 연결볼트 사이에 코일스프링을 장치하는 구성을 채택</u>하였다. 이로써 고정 너트를 조일 때는 나사결합과 코일스프링의 탄성을 더하여 고정너트의 긴장력을 높이고, 고정너트를 풀 때는 고정너트와 연결볼트 사이에 놓인 코일스프링이 고정너트의 이완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고정자의 구조가 간편하면서 사용이 용이하고 고정효과가 확고하여 슬라이더 짐받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이점"을 가진 스쿠터용 슬라이더 짐받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3) 즉, 이 사건 특허발명은 '① 고정봉과 나사결합구조를 갖는 고정부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하 '제1 기술사상'이라 한다)과 ② '고정너트 내부에 고정볼트와 결합된 연결볼트를 설치하고 다시 코일스프링을 고정너트 내측과 연결볼트 사이에 배치하는 것'(이하 '제2 기술사상'이라 한다)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4) 그런데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10-0007874호(갑 제13호증)에는 다음과 같이 고정봉과 나사결합구조를 갖는 고정부를 함께 이용하여 짐받이프레임의 위치설정과설정위치에서의 고정을 안정적으로 이루는 기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제1 기술사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1 기술사상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이전에 이미 공지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한 기술사상의 핵심은 제2 기술사상이다.

[0001] 본 고안은 주유구 또는 공구함이 안장 밑에 위치한 오토바이(스쿠터)에 있어서, 짐받이가 슬라이드식으로 가변이송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서 안장의 개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이에 따라 주유 또는 공구의 사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 <u>오토바이용 가변</u>짐받이에 관한 것이다.

[0030] 또한 상기 안전난간(21)과 슬라이딩 홀더(3) 일 측 저면에 스프링(41)과 위치 고정핀(42) 및 하우징(43)으로 이루어진 <u>짐받이 고정핀(4)</u>을 장착 고정시켰으므로 등받이(22)를 세

웠을 때와 <u>짐받이프레임(2)을 전진 또는 후진시킨 상태를 유지할 때 간단하게 고정</u>시킬 수 있게 된다.

[0031] 또, 상기 슬라이딩 홀더(3) 타 측 저면에 나사관(51)과 수나사봉(52), 그리고 록크너트 (53)로 이루어진 <u>잠금장치(5)</u>를 더 설치 구성함으로서 오토바이에 화물 등을 싣고 이동할 때 상기 잠금장치(5)로서 <u>짐받이프레임(2)을 확실하게 고정</u>시킬 수 있음으로 안전성을 한층 더높일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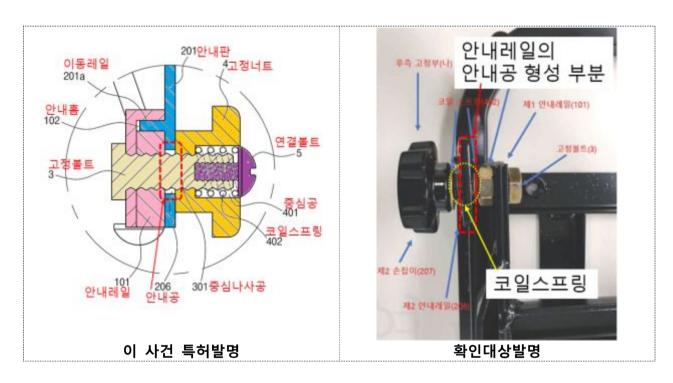


- (5) 이에 대해 원고는, 해당 선행고안의 잠금장치(5)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고정자(가)와 제2고정자(나)의 배치가 다르고 이로 인하여 고정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술사상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제1고정자(가)와 제2고정자(나)가 나란히 배치되어 야 한다는 한정을 하고 있지 않다.
- (나) 두 고정수단을 나란히 배치할지, 아니면 양측으로 배치할지는 구성의 형태와 주변 구성과의 관계, 사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히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 (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제1고정자(가)는 고정홈과의 관계에서 삽입을 위해 어느 정도 유격을 가지는 구조에 그칠 수밖에 없고, 요동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고정은 제2고정자(나)에 의해 이루어질 뿐이다. 짐받이프레임의 전후 진동에 대한 효과적인 고정

이 제1고정자(가)와 제2고정자(나)가 같은 측 전후에 배치된 구성에 기인한 것이라고도보기 어렵다.

### 다)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의 동일 여부

(가) 제2 기술사상을 중심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과제해결 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 여부를 살펴본다.



-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제2 기술사상이 구현된 구성은 제2고정자(나)이고,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부분은 후측 고정부(나)이다. 그런데 앞서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당 구성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코일스프링(402)은 고정너트(4)의 내측과 연결볼트(5) 사이에 장치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제2 코일스프링(402)은 제2 손잡이 (207)와 고정볼트(3) 중간에 결합된 너트(4) 사이에 장치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제2 기술사상을 채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 또한,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코일스프링에 의한 작용효과

측면에서도 전혀 다르다.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2고정자(나)에서 코일스프링(402)은 고정너트(4) 내측과 연결볼트(5) 사이에 장치되어 있으므로, 고정너트를 조일 때(앞서 좌측 도면 기준으로 고정너트가 좌측으로 이동) 고정너트의 진행과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코일스프링의 탄성이 더해지면서 고정너트는 나사결합에 의할 때보다 안내판에 더욱 밀착하게 된다. 반대로 고정너트를 풀 때(앞서 좌측 도면 기준으로 고정너트가 우측으로 이동) 코일스프링의 탄성은 고정너트의 진행과 반대방향을 향하여 고정너트의 이완을 제한한다.

②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의 후측 고정부(나)에서 코일스프링(402)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고정너트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제2 손잡이(207)의 외측과 너트(4) 사이에 장치되어 있으므로, 제2 손잡이를 조일 때(앞서 우측 도면 기준으로 제2 손잡이가 우측으로 이동) 제2 손잡이의 진행과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코일스프링의 탄성 저항으로 제2 손잡이는 나사결합에 의할 때보다 제2 안내레일에 덜 밀착하게 된다. 반대로 제2 손잡이를 풀때(앞서 우측 도면 기준으로 제2 손잡이가 좌측으로 이동) 코일스프링의 탄성은 제2 손잡이의 진행과 같은 방향을 향하여 제2 손잡이를 그 진행 방향으로 더욱 밀어낸다. 이는 사용자가 제2 손잡이를 더욱 쉽게 풀도록 돕는 작용은 할지언정 제2 손잡이의 이완을 제한하는 작용은 전혀 하지 못한다(확인대상발명 도7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에서 제2 손잡이가 풀리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제2 손잡이 내측에서 고정볼트의 중심공과 연결된 연결볼트의 작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라) 검토결과의 정리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다르므로 균등관계에 있지 않다.

# 나. 소결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문언상으로 동일하지 않고 균등관계에 있지 도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임경옥

판사 윤재필

#### [별지]

####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1.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슬라이더 짐받이

-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도 1은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 짐받이의 전체적인 사진.
- 도 2은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짐받이에 있어서 전측 고정부와 후측 고정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와 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슬라이더 짐받이의 저면에 대한 사진.
- 도 3는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 짐받이에 있어서 전측 고정부가 별도로 설치된 전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를 타고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한 전면부에 대한 사진.
- 도 4는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 짐받이에 있어서 스쿠터에 설치되었을 경우에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제1 안내레일 표면과 별도로 설치된 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에 대한 사진.
- 도 5은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 짐받이에 있어서 후측 고정부의 세부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후면부를 나타낸 사진.
- 도 6은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 짐받이에 있어서 후측 고정부를 고정시키는 제2 손잡이에 대한 사진.
- 도 7은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 짐받이에 있어서 후측 고정부의 절단 단면에 대한 사진
- 도 8은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 짐받이의 고정방식에 대한 사진

도 9는 확인대상발명의 전측 고정부에 대해서 확대해서 표시한 사진으로 안내관체, 고정봉, 돌기, 제1 코일스프링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사진.

- 3.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
- (1) 확인대상발명은 슬라이더 짐받이에 관한 것입니다.

도 1은 슬라이더 짐받이의 전체적인 사진이며,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드 짐받이는 고정설치대(1), 짐받이프레임(2), 안내홈(102), 이동레일(201a)을 포함합니다.

즉, 오토바이의 후미부에 부착되는 4각형상의 고정설치대(1)위에 4각형상으로 된 짐받이프레임 (2)을 적층하고 고정설치대(1)의 양측면에 형성된 제1 안내레일(101) 안내홈(102)에 짐받이프레임(2)의 양측저면에 형성된 안내판(201)의 내측면에 형성된 이동레일(201a)을 결합하여 짐받이프레임(2)이 고정설치대(1) 위에서 길이방향으로 슬라이드 되게 하는 슬라이더 짐받이입니다.

이러한 슬라이더 짐받이는 오토바이의 운전자 뒷편에 설치되어 음식물 등을 담을 수 있는 배달통 등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2) 도 2는 슬라이더 짐받이의 저면이며, 슬라이더 짐받이는 크게 사람이 탑승하는 위치와 거리가 가까운 전측 고정부(가)와 사람이 탑승하는 위치와 거리가 먼 후측 고정부(나)로 구성되며, 이 사건 대상 특허의 제1 고정자(가)와 대비되는 전측고정부(가)가 고정되는 부분에는 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103a)와 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103b)가 구성됩니다.

즉, 전측 고정부(가)에서 제1 안내레일(101)위에 별도로 설치된 전측 또는 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103a)(103b)에 생긴 삽입홈(203) 구멍을 통해 삽입되어 고정될 수 있는 공간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전측 고정부(가)는 짐받이프레임(2)의 일측 안내판(201) 표면에 안내관체

(202)를 부착하여 안내관체(202) 중심부에서 고정설치대(1)의 제1안내레일(101) 위에 추가 형성된 슬라이딩 플레이트(103a)(103b)의 일측에 삽입홈(203)을 뚫어서 삽입홈(203)을 관통하는 고정봉(204)을 삽통하고 - 안내관체(202)에는 고정봉(204)이 통과할 수 있는 가이드구멍(209)(209a)이 생성됨-, 고정봉(204)에는 안내관체(202) 내부에서 슬라이딩플레이트(103a)(103b)쪽으로 탄력이 장진되도록 고정봉(204)의 외주면에 형성된 돌기(204a)와 안내관체(202)의 외측가이드구멍(209) 내벽 사이에 설치되어 고정봉(204)의 외측을 감싸는 제1 코일스프링(205)을 설치하고 - 슬라이딩 플레이트(103a)(103b)는 제1 안내레일(101) 위에 별도로 구성되어 전축 슬라이딩 플레이트(103a)와 후축 슬라이딩 플레이트(103b)로 구성됨-, 고정봉(204)의 외측단을 돌출시켜 제1 손잡이(204b)를 위치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도 3에서 더욱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3) 도 3은 슬라이더 짐받이의 전면부 일부를 확대하여 나타낸 것으로 전측고정부(가)에 제1 손잡이(204b) 형태로 안내관체(202)와 결합되어 있으며 제1 코일스프링(205)이 안내관체(202) 내부에 있어 밀거나 당겨서 고정시킬 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측 고정부(가)는 제1 안내레일(101) 위에 별도로 구성되는 사다리꼴 모양의 전측 및 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103a)(103b)가 추가되며, 슬라이더 짐받이를 탑승자와 가깝게 접근시키거나 멀게 이동시키면 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103a) 또는 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103b)를 타고 전측 고정부(가)가 그 위에 형성된 삽입홈(203)에 끼워져서 결합되거나 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103a) 또는 후측슬라이딩 플레이트(103b)를 지나치게 됩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전측 및 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103a)(103b)에 생성된 삽입홈(203)에 전 측 고정부(가) 부분이 끼워질 수 있습니다.

(4) 도 4는 슬라이더 짐받이에 있어서 스쿠터에 설치되었을 경우에 보일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제1 안내레일(101) 표면과는 별도로 설치된 전측 슬라이딩플레이트(103a)의 위치를 표시

하여 나타낸 것이며, 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103a)에는 삽입홈(203)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 이 사건 대상발명의 제1 고정자(가)와 대비되는 전측 고정부(가)의 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 (103a)는 제1 안내레일(101) 표면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별도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제1안내레일(101)에 사다리꼴 모양으로 추가되어 결합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 (5) 도 5는 이 사건 대상 특허 제2 고정자(나)와 대비되는 슬라이드 짐받이의 후면부에 있는 후측 고정부(나)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여 나타낸 것으로 후측 고정부(나)는 제2손잡이(207)를 돌려서 제2 안내레일(208)) 쪽으로 접근시켜 고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하면, 후측 고정부(나)는 일측 제1 안내레일(101)의 후측에서 짐받이프레임(2)의 제2 안내레일(208)에 형성된 제2 안내공(206)을 향해 고정볼트(3)를 설치하고 고정볼트(3)의 중간 일측에 너트(4)를 나사결합하되 제2 코일스프링(402)은 너트(4)의 일단부와 접촉하고 제2 손잡이(207)의 끝단부와 접촉하며- 너트(4)는 제1 안내레일(101)과는 일체로 형성되지 않으며 너트(4)와 고정볼트(3) 머리 사이에 제1 안내레일(101)이 위치함-, 고정볼트(3) 끝단에 제2 손잡이(207)를 끼우고 제2 손잡이(207)의 중심축을 연결볼트(5)로 나사결합시키고, 고정볼트(3)에 끼워지되 너트(4)와 제2 손잡이(207) 사이 공간에 위치하는 제2코일스프링(402)을 장치하고, 제2 손잡이(207)의 일측면이 제2코일스프링(402)을 압착하여 제2 안내레일(208)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비되는 이 사건 대상 특허의 중심공과 연결볼트 사이에 제2 코일스프링(402)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즉, 확인대상발명은 고정볼트(3)가 제1 안내레일(101)을 통과하고 너트(4)가 결합되고 외부로 노출된 제2 코일스프링(402)이 결합되고 제2 안내레일(208)을 통과하여 제2 손잡이(207)가 결합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후측 고정부(나)의 제2 손잡이(207)가 제2 안내레일(208)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제2 코일스프링(402)을 압착하여 제2 안내레일(208)과 접촉하는 구성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 (6) 도 6은 슬라이드 짐받이의 후면부에 있는 후측 고정부(나)의 제2 손잡이(207)를 외측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사진이며, 이 사건 대상 특허의 고정너트 중심공과 연결볼트 사이에 코일스프 링이 장치할 수 없는 구성입니다.
- 이 사건 대상 특허의 제2 고정자(나)와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후측 고정부(나)는 제2 손잡이 (207)를 회전시켜서 제2 안내레일(208)과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구성입니다.
- (7) 도 7은 도 6의 구성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 짐받이의 후면부에 있는 후 측 고정부(나)를 반으로 절단한 절단면을 나타낸 사진이며, 이 사건 대상 특허와는 다르게 확인 대상발명은 제2 코일스프링(402)이 고정너트 중심공과 연결볼트 사이에 위치하여 내부로 실장되는 것이 아닌 외부로 노출되는 구성입니다.
- 즉, 확인대상발명의 후측 고정부(나)는 제1 안내레일(101)을 통과하는 고정볼트(3)가 있으며, 이러한 고정볼트(3)를 너트(4)의 일단부에서 제2 손잡이(207)의 일단부 사이에서 외측에서 감싸고있는 제2 코일스프링(402)이 있으며, 연결볼트(5)와 체결되는 제2 손잡이(207)가 결합되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제2손잡이(207)를 회전시키면 제2 안내레일(208)에 회전되는 방향에 따라 밀착되거나 멀어지는 구성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 (9) 도 9는 확인대상발명의 전측 고정부에 대해서 확대해서 표시한 사진으로 안내관체, 고정봉, 돌기, 제1 코일스프링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사진입니다.
- 다시 말해 안내관체(202)에는 고정봉(204)이 통과할 수 있는 가이드구멍(209)(209a)이 생성되어 있으며, 고정봉(204)에는 안내관체(202) 내부에서 슬라이딩 플레이트(103a)(103b)쪽으로 탄력이 장진되도록 고정봉(204)의 외주면에 형성된 돌기(204a)와 안내관체(202)의 외측 가이드구멍 (209) 내벽 사이에 설치되어 고정봉(204)의 외측을 감싸는 제1 코일스프링(205)을 설치하여져 있는 구성입니다.
- (9) 확인대상발명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 사건 대상 특허의 안내레일표면에 형성되는

고정홈이 있고 여기에 고정봉이 삽통되는 고정홈(103)(104)이 없으며, 제1 안내레일(101) 위에 별도 구성인 사다리꼴 모양의 슬라이딩 플레이트(103a)(103b)가 추가되어 그 위에 삽입홈(203)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특허와 같이 중심공과 연결볼트 사이에 코일스프링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며, 고정볼트(3)가 제1 안내레일(101)에 형성되어 있는 구멍을 통과하고 별개로 형성된 너트(4)가 결합되고 제2 코일스프링(402)이 결합되고 제2 손잡이(207)가 결합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도 8의 확인대상 발명은 전측 고정부(가)와 후측 고정부(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전측 고정부(가)가 고정하는 경우에는 후측 고정부(나)의 고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으며, 후측 고정부(나)가 고정하는 경우에는 전측 고정부(가)의 고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 측 고정부(가)와 후측 고정부(나)가 동시에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측 고정부(가)의 경우 슬라이딩 플레이트(103a)(103b)를 타고 이동 및 고정하게 되어 유연한 슬라이딩과 슬라이딩 플레이트(103a)(103b)에 형성되어 있는 삽입홈(203)에 의해 가둬지므로 확실한 고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쿠터의 진동이 있는 경우에 이 사건 대상 특허와 같이 레일 표면에 고정홈이 형성되어 있다면 오토바이의 전후 또는 좌우 진동에 의해 고정봉이 빠져나갈 수 있으나, 확인대상 발명은 슬라이더 짐받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측 고정부(가)의 고정봉(204)을 잡아당겨서 부드럽게 슬라이딩 플레이트(103a)(103b)를 타고 이동시킬 수도 있으며, 고정봉(204)이 슬라이딩 플레이트(103a)(103b)에 형성되어 있는 삽입홈(203)에 확실하게 들어가서 좌우측의 이동이 불가능하게되는 확실한 고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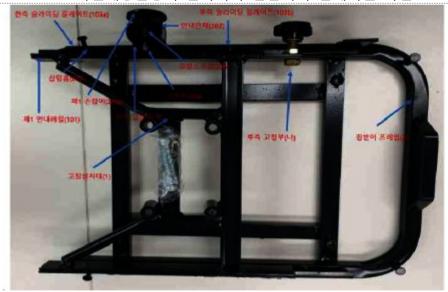
또한, 이 사건 대상 특허발명이 나사공 내측과 고정볼트(3) 외면 사이에 코일스프링(402)이 장진되는 구성을 채택하면서도 나사결합되는 형태이므로 고정부의 구조가 복잡하고 제작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확인대상 발명은 짐받이의 제작시에 너트(4)와 제2 코일스프 링(402)의 설치위치 단순하게 개편하면서도 접촉력을 증대할 수 있는 동작 메커니즘을 확실하게 개선하여 생산성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슬라이더 짐받이의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도 나사공 내측과 고정볼트(3) 외면 사이에 코일스프링(402)이 장진되는 복잡한 구성을 사용자의 사용이 직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의 편의성이 강화된 장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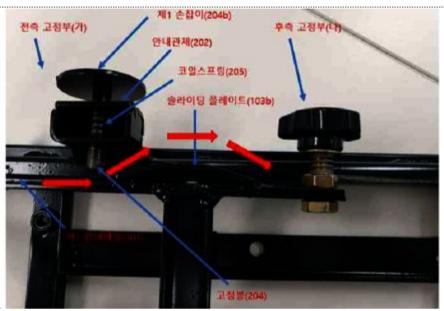
### 확인대상발명 주요 도면



도 1.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 짐받이의 전체적인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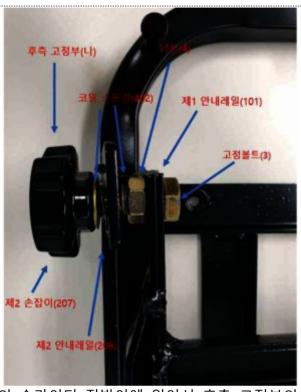
도 2은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짐받이에 있어서 전측 고정부와 후측 고정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와 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슬라이더 짐받이의 저면에 대한 사진.



도 3는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 짐받이에 있어서 전측 고정부가 별도로 설치된 전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를 타고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한 전면부에 대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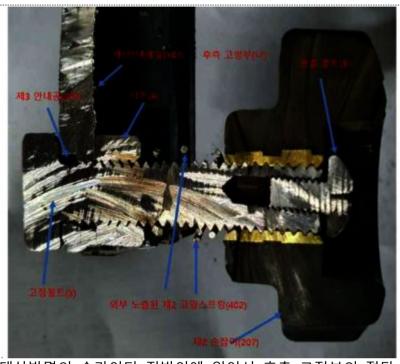
도 4는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 짐받이에 있어서 스쿠터에 설치되었을 경우에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제1 안내레일 표면과 별도로 설치된 전측 슬라이딩 플레이트에 대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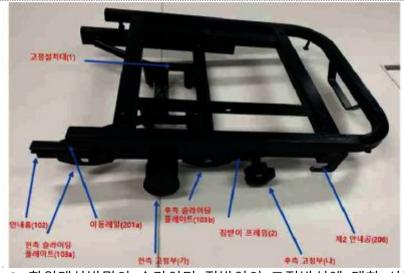
도 5은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 짐받이에 있어서 후측 고정부의 세부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후면부를 나타낸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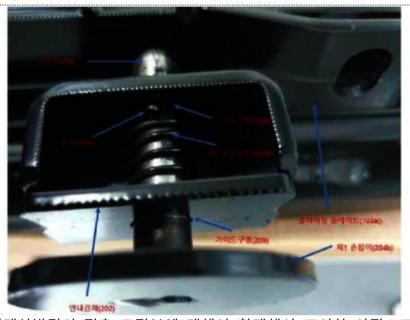
도 6은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 짐받이에 있어서 후측 고정부를 고정시키는 제2 손잡이에 대한 사진.



도 7은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 짐받이에 있어서 후측 고정부의 절단 단면에 대한 사진



도 8. 확인대상발명의 슬라이더 짐받이의 고정방식에 대한 사진



도 9는 확인대상발명의 전측 고정부에 대해서 확대해서 표시한 사진으로 안내관체, 고정봉, 돌기, 제1 코일스프링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사진.